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거부 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6. 7. 14.(화)
전송매수 : 총 11매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계약서대로 프레시백 회수·반납만 했더니 ‘집단해고’!

쿠팡CLS와 하하물류 규탄한다!

쿠팡CLS·하하물류 택배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3: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오늘(7/14)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와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의 부당계약해지는 지난 6월 30일, 춘천지역의 쿠팡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가 8명의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 계약을 해지한 건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앞선 6월 17일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 건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그로부터 2주 뒤에 택배노조 소속인 8명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집단 계약해지를 한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이며 불공정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2. 택배노동자들은 위수탁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택배 대리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택배 대리점이 노동 방식을 지시, 감독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배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해당 계약해지로, 8명의 택배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해놓고, 해당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3. 계약해지 당한 택배노동자들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3월 18일부터 야간배송과 프레스백 배송을 일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하하물류가 프레스백 해체 및 정리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항목에도 없는 ‘계약 외 업무’입니다. 집단해고 피해당사자인 택배노동자 조우현씨는 “하하물류는 한 사람의 잘못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같은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을 한날한시에 한꺼번에 잘랐고, 이로 인해 여덟 가정의 생계가 함께 무너졌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조우현씨는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습니다.
4. 지난 6월 춘천지역에서 선발적으로 시행된 ‘프레스백 회수 외 업무 강요 문제제기’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쿠팡 대리점에 속한 택배노동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은 “현재 강원지역에서 춘천 하하물류의 프레스백 집단해고 사안뿐만 아니라, 강원과 원주에서 강행된 야간배송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주에서도 쿠팡 대리점 ‘워크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현장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강민욱 본부장은 “이번 하하물류의 집단해고는 프레스백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노동조합 단위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 생각한다”라며 “현재 쿠팡 싸움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지역에서 74개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이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어서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단영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의 위법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의 문제점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한 ‘불이익 제공’인 점,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한 ‘보복조치 행위’인 점, △해지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업무가 애초에 계약상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하하물류 집단해고 건에 대해 원청인 쿠팡CLS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쿠팡CLS 영업점 계약서에 ‘회사가 정하는 지침을 따르라’는 포괄적 복종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매개로 쿠팡CLS가 프레스백 노동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정작 책임은 영업점에 떠넘기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노동자들은 해고된 당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20일에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해당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 집단해고는 단순 하하물류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복성 계약해지’ 문제가 아니라, 쿠팡CLS의 포괄적 복종 조항에 따른 업무지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쿠팡CLS가 계약 외 업무 강요 문제와 집단해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조사 및 시정명령을 촉구했습니다. 끝.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불임2 : 신고서 개요

▣ 불임3 : 참가자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계약 외 업무 강요 거부하니 '집단해고'한 쿠팡CLS와 하하물류 규탄한다! >
쿠팡CLS, 하하물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7. 14.(화)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집단해고 강행한 하하물류 규탄 : 계약해지 피해당사자
 - 발언2. 쿠팡CLS 및 하하물류의 집단해고 대응 투쟁 계획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3. 신고 취지 및 신고서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붙임2. 공정위 신고 개요

1. 신고인 개요

- 신고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참여연대
- 피신고인
 - 쿠팡로지스틱스 유한회사
 - 주식회사 하하물류

2. 위반행위와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위반**
 - 쿠팡CLS와 하하물류 산하 택배기사들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며, 하하물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함. 또한 하하물류의 계약해지는 보복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임.
 - 또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하는 것 뿐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그러나 하하물류와 택배노동자간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은 ‘포괄적 복종 조항’에 해당함. 이는 쿠팡CLS가 위탁자를 매개로 사실상의 노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임.
- **공정거래법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 하하물류의 계약해지는 택배노동자들이 ‘계약 외 업무 강요’ 사건 신고 접수한 지 13일 만에 이뤄졌으며, 신고 대상은 모두 노동조합 소속 8명으로 한정됨.
 - 신고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업무 거부 행위에 대해 신고 직후 계약 위반으로 의율하여 해지를 통보함. 이는 전형적인 보복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

■ 붙임3 : 참가자 발언문

계약해지 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 대리점 하하물류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조우현입니다.

저는 쿠팡 춘천모바일캠프에서 배송을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캠프에 나가 분류작업을 하고, 물건을 싣고, 골목과 아파트를 돌며 고객에게 배송하고, 프레스백을 회수해 반납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일을, 저는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쿠팡은 지난 3월 18일부로 야간배송과 프레스백 배송을 일방적으로 시행했고, 하하물류는 그 날부터 프레스백을 해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돌아와 회수해 온 보냉백을 하나하나 뜯고 청소하 정리하는 일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수수료 항목에도 없습니다. 대가 없이, 매일,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건 우리가 하기로 계약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송도 하고 회수도 하고 반납도 하겠지만, 계약에 없는 일까지 공짜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리한 요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일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잘못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7월 1일, 저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같은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잘렸습니다.

여덟 명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없는 일을 거부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여덟은 하루아침에 일을 잃었고, 여덟 가정의 생계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서명한 종이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내겠다는 통보서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하하물류만이 아닙니다. 프레스백은 쿠팡의 물건이고, 프레스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것도 쿠팡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우리는 영업점과 계약했을 뿐"이라며 뒤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이 노동자를 잘라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쿠팡의 책임을 함께 묻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달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프레스백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물러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한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 현장이라면, 오늘 저희에게 벌어진 일은 내일 다른 캠프의 누군가에게 똑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을 돌던 그 구역으로, 아침마다 나가던 그 캠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정위 신고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쿠팡에서 벌어진 8명의 집단해고는, 프레시백 업무라는 불공정한 업무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대응해오던 그들의 반대자를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함께 해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과 함께 이미 지난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백 업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도 되지 않아 해고가 된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8명의 집단을 상대로 한 계약해지를 단행하는 것은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레시백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노동조합 단위 전체를 한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전 공정위 신고에 더불어서 오늘 집단해고에 대해 다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당일 오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 달 20일로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현재 집단해고 철회,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일간 2,000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탄원서에 서명해주셨습니다.

현재 강원지역에서 춘천 하하물류의 프레시백 집단해고 사안 뿐만 아니라 강원과 원주에서 강행된 야간배송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주에서도 쿠팡 대리점 워크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현장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 싸움이 강원에서 집중되고 있고 가장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바, 강원지역 74개 시민사회 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함께 싸움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서는 이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시에 프레시백 사안은 계약의 영역을 넘어 2021년 우리 사회가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을 과로로 떠나보내고 만들었던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택배노동자의 업무를 집화와 배송으로 규정했고, 그 외 업무를 택배노동자의 업무에서 배제 시켰습니다. 프레시백과 같은 다회용기에 대한 수거와 반납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기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3차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프레시백 업무와 같은 부가적 업무가 이전의 분류작업처럼 특수고용 간접고용의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한다면 과로사는 분명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같이 나서서 또다시 과로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공정위 신고에 나서주신 민변 변호사분들과 참여연대 활동가분들께 그리고 탄원서에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언문

저는 지난 6월 17일, 그리고 7월 3일 그리고 오늘 세 차례에 걸쳐 이번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보복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복성 집단해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하고, 그 위법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저희는 쿠팡CLS와 그 영업점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라는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택배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접수한 지 단 13일 만인 6월 30일, 하하물류는 부당함에 저항한 춘천의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춘천 지역 택배기사 18명 중 8명, 절반 가까이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집단해고는 세 가지 점에서 위법합니다. 첫째, 이번 해고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수입 전부를 회사에 의존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계약해지는 생계수단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래관계를 끊어버리는 전형적인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법 위반의 대표적 예시로 명시하고 있고, 이번 해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히 이번 해고는 공정거래법 제48조, 즉 ‘보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힘없는 사업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하물류는 지난 6월 13일 공정위 신고 이후 계약 외 업무를 거부한 택배노동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입니다.

셋째, 해지 사유 자체가 위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이 거부한 프레시백 업무는 애초에 계약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상 회수 업무는 “수거 후 반납”, 그것이 전부이고, 계약서 어디에도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없는 의무를 만들어내 이를 위반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약 외 업무 거부라는 하나의 거부 행위를 무려 다섯 가지 위반 사유로 부풀려서 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해고 행위 자체로 철저히 보복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원청인 쿠팡CLS가 있습니다. 쿠팡CLS는 영업점 계약서에 “회사가 정하는 지침을 따르라”는 포괄적 복종 조항을 심어두었습니다. 이 조항을 매개로 원청은 프레스백 노동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정작 책임은 영업점에 떠넘기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과 제48조는 사업자가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영업점 뒤에 숨은 원청 쿠팡CLS 역시 이 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프레스백 노동은 쿠팡의 로켓프레스가 돌아가는 전국 모든 현장에 깔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뿌리에는 쿠팡CLS가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집단해고를 이대로 방치하면, 이는 전국의 모든 쿠팡 택배노동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협박이 될 것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거대 플랫폼 앞에서 노동자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질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하하물류는 위법하고 무효인 이번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쿠팡CLS는 영업점 뒤에 숨지 말고, 2021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며 프레스백 공짜노동 강요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보복성 집단해고를 엄중히 조사하여, 해고 철회와 재발방지 시정명령으로 단호히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